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12.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위원회 (2005. 12. 8)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별예산제도 도입·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안사업(사업별예산제도 도입·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14명을 1,3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88명을 1,294명으로 총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직급조정 및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그에 따른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5. 10. 20 일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이 2005.11.1 서울 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정원승인 및 인력보강 지침이 통보된 사업별예산제도 도입·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 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에서 사업별예산제도 도입(7급:1명, 8급:1명), 복식부기 확산보급(7급:1명, 8급:1명),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6급:1명, 7급:1명) 등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8명에서 1,294명으로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14명을 1,320명으로 개정함.

○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6명중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 5급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관련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공무원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1명 증원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함.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5급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제도 시범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 및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등으로 2억7,230만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별정직 공무원 조정 방식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는 것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복식부기 확산 보급에 따라 증원되는 직원은 일반직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한시적으로 증원되는 정원은 시기가 도래되면 정원은 원위치 되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영남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5. 1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사업별예산제도 도입·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현안사업(사업별예산제도 도입·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14명을 1,3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88명을 1,294명으로 총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직급조정 및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그에 따른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함.

3. 주요 토의과제 :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4.1.29 법률 제7128호)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5.10.20 대통령령 제19091)제16조·제19조·제21조
- (3) 행정자치부 지침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2005.11.01 시달)
 -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지침(2005.10.21 시달)
 -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2005.09.30 시달)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2005.09.23 시달)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완료

다. 협 의

-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8324(2005.11.01) · 조직담당관-8021(2005.10.21)호 · 조직담당관-7941(2005.10.18)호 · 조직담당관-7484(2005.09.30)
- (2)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5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2005. 10.27 ~ 11. 16)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 (4) 사업별예산 제도 도입등 한시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314명”을 “1,320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288명”을 “1,294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6명중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 7급 1명, 8급 1명은 2007.12.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 계	1,320	907	26	91	296
정무직 계	1	1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944	631	13	76	224
3급	1	1			
4급	7	5	1	1	
5급	59	25	2 (행정 또는 별정)	8	24
6급	176	137	3	12	24
7급	274	171	4	27	72
8급	295	206	3	22	64
9급	132	86		6	40
별정직 계	13	7	5	1	0
6급 상당	3	3			
7급 상당	7	3	3	1	
8급 상당	2	1	1		
9급 상당	1		1		
기능직 계	362	268	8	14	72
6급	5	5			
7급	14	14			
8급	33	29			4
9급	93	65	6	3	19
10급	217	155	2	11	4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8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 - - - - 1,320명 - - - - - - - 1. - - - - - : 1,29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안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4	901	26	91	296	1,320	907	26	91	296
정무직 계	1	1	0	0	0	1	1	0	0	0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938	625	13	76	224	944	631	13	76	224
3급	1	1				1	1			
4급	7	5	1	1		7	5	1	1	
5급	59	25	2 <small>(행정·발경)</small>	8	24	59	25	2 <small>(행정·발경)</small>	8	24
6급	175	136	3	12	24	176	137	3	12	24
7급	271	168	4	27	72	274	171	4	27	72
8급	293	204	3	22	64	295	206	3	22	64
9급	132	86		6	40	132	86		6	40
별정직 계	12	6	5	1	0	13	7	5	1	0
6급 상당	1	1				3	3			
7급 상당	9	5	3	1		7	3	3	1	
8급 상당	1		1			2	1	1		
9급 상당	1		1			1		1		
기능직 계	363	269	8	14	72	362	268	8	14	72
6급	5	5				5	5			
7급	14	14				14	14			
8급	33	29			4	33	29			4
9급	93	65	6	3	19	93	65	6	3	19
10급	218	156	2	11	49	217	155	2	11	49

사업별예산제도 도입등 한시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6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2. 정원의 변동 내역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및 복식부기 확산 보급·지방행정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한시인력 6명 증원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72,304		
○ 인건비	233,358		
- 기본급	137,119	6급 24호 1명 7급 17호 3명 8급 12호 2명 기준	
- 수 당	37,584		
- 정액급식비	9,360		
- 교통보조비	7,560		
- 명절휴가비	12,952		
- 가계지원비	21,587		
- 연가보상비	7,196		
- 기타직보수	-		
- 일용인부임	-		
○ 물건비	11,97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5,88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0
- 이전경비			26,976
- 성과상여금	6,877	6명 기준	
- 연금부담금	15,187		
- 국민건강보험금	4,912		
- 연금지급금	-		